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조현중 특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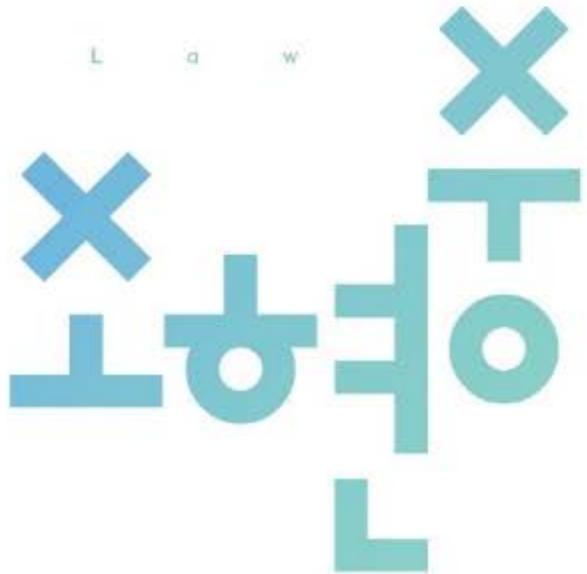
서브집 핸드북

제3판



P o t e n t L a w

■ 변리사 조현중



PREFACE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본 교재에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약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JHJ-GROUP.com으로 질문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9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본 교재는 아래의 법 및 판례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순번	법령 등	비고
1	특허법	법률 제 18505호, 2022.4.20. 시행
2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2590호, 2022.4.20. 시행
3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56호, 2022.4.20. 시행
4	判例	2023년 4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

CONTENTS

PART 01 · 특허법 2

제01장 · 특허법	2
제1절 총칙 <개정 2014. 6. 11.>	2
제2절 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 6. 11.>	13
제3절 심사 <개정 2014. 6. 11.>	31
제4절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 6. 11.>	39
제5절 특허권 <개정 2014. 6. 11.>	45
제6절 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 6. 11.>	66
제6절의2 특허취소신청 <개정 2016. 2. 29.>	70
제7절 심판 <개정 2014. 6. 11.>	77
제8절 재심 <개정 2014. 6. 11.>	99
제9절 소송 <개정 2014. 6. 11.>	101
제10절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 6. 11.>	104
제11절 보착 <개정 2014. 6. 11.>	119
제12절 벌칙 <개정 2014. 6. 11.>	126

PART 02 · 이론편 129

제01장 · 절차총칙	130
제02장 · 거절이유	149
제03장 · 출원절차	173

제04장 · 심사, 공개	186
제05장 · 특허권, 실시권, 질권	192
제06장 · 침해실체	207
제07장 · 침해 절차 (심판/특허법원 소송)	218
제08장 · 조약	235

PART 03 · 요약편 243

제01장 · 절차총칙	244
제02장 · 거절이유	254
제03장 · 절차	264
제04장 · 심사관 심사	282
제05장 · 특허권, 실시권, 질권	286
제06장 · 배타권 침해실체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300
제07장 · 특허법배타권 침해절차 - 심판, 소송	301
제08장 · PCT / 기타조약	312

PATENT LAW

PART

01

조문편

CHAPTER 1 특허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9007호, 2022. 10. 18.,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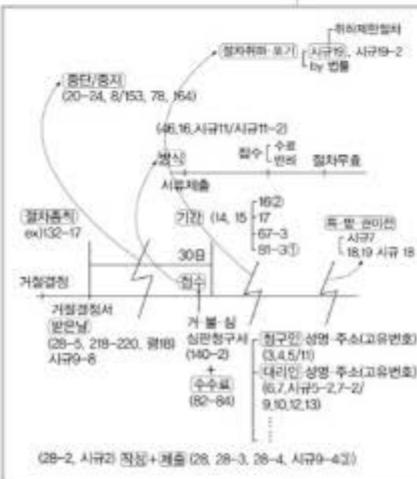
제1절 ■ 총칙 (개정 2014. 6. 11.)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출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출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



9) 미생년자 피한정후견인 미생년후견
인에서 극복된 지른 말한다.

9-1) 8 - 사 · 능 · 학 · 수 · 사 · 상
20-사 · 능 · 학 · 수 · 사 · 상 ·
사 · 상 · 사 · 상

10) 치분의 주체 구분 행정이다. 출원 등
기타절차는 특허청장이 담당한다. 심
판장 지정된 후 심판장자는 심판장
이 담당한다. 구술심리절차는 심판장
지정된 후 진행되는 심판절차다.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⁹⁻¹⁾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출탁자(受託者)의 신탁임부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내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대리권 상실) [전문개정 2014. 6. 11.]

제9조(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히 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특허청장¹⁰⁾ 또는 제145조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述
審理)에서 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
을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전술할 능력이 없
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
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
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
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9. 12.
10.]>

11) (대표자 선임) 개별대리의 유사한
내용이다. 국내출원은 본인만 대표
자 선임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국
제출원 part 1에서는 수리판정이 대
표자 지정할 수도 있다(197¹²⁾).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
두를 대표¹³⁾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
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특허출원의 변경 · 포기 · 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거절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¹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
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
허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
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
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¹⁵⁾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매(每)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
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¹⁶⁾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
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
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
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도시 · 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¹⁷⁾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
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¹⁸⁾ <개정 2016. 2. 29.>

12) 대리인 서면증명기과 유사한 내용
이다. '대표'의 생략은 '대리'의 생
점과 논리가 유사하다.

13) 34, 35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고 빠로 무방하다.

14) 절차와 무관한 존속기간계산(88) 등
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절차란 서
면의 계산이 필요한 행위라고 정리
하면 된다.

15) (법정기간) 서류18) 주기 연장 횟
수 1회, 기간 30일

16) 거절심 청구기간 연장 치분의 주체
는 특허청장이다. 삼법 · 결정취소소
송 부기기간 치분의 주체는 심
판장이다(188¹⁹⁾).

17) 보정명령(46). 반려이유통지(서규11)
시의 지정기간을 예로 들 수 있다.

18) 보정명령서(141)의 지정기간을 예로
들 수 있다.

19) 거절이유통지(63)시의 지정기간을 예로
들 수 있다.

20) 구술심리기일(154①)을 예로 들 수 있다

21) 기간정정은 개선4 → 연장 등(내
→ 징지(20, 23, 78, 153, 164)
→ 추후보완(162): 17, 67-3,
61-3①)으로 이어졌다.

주후보완시유	기간
보정명령(62)	
기별식·재상기	2월, 1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67-3) 등교로, 유지료(61-30)	

21-1) 17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그 외 - 정당한 사유

② 특허청장 · 특허심판원장¹⁷⁾ · 심판장¹⁸⁾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¹⁹⁾(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
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
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
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²⁰⁾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 6. 11.]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
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
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
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
은 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
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²¹⁾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 · 단서에 따른 무효처
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
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치불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²¹⁻¹⁾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
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1.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전문개정 2014. 6. 11.]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9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
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인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
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0조(절차의 중단)²²⁾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
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했을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리를 상실한 경우
7. 과산판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상실) 사망한 경우 [전문
개정 2014. 6. 11.]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²²⁾ 제20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호의 경우 :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판
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
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 :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 :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 :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0조제7호의 경우 :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전문개정 2014. 6. 11.]

21-2) 사·동·한·수·사·설·사·
설·사·설

22) 중단사유와 수계할 자 경리한 표이다

중단사유	수계할 자
당사자 사망	상속인 등(단 상속포기자) 지난 후 수계 가능)
법인 합병에 따른 소멸	합병 후 법인
당사자 능력상실, 법정대리인 사망 · 대리권 상실	능력 회복한 당사자, 법정대리인
수탁자 임무 종료 대표자 사망 · 자격 상실	새로운 수탁자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파산판재인 등 사망 · 자격 상실	같은 자격 가진 자

제22조(수계신청)²²⁻¹⁾ ①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한 것을 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²²⁻²⁾.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3조(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외자 중 외국인²³⁾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6. 11.]

제26조 삭제 (2011. 12. 2.)

제27조 삭제 (2001. 2. 3.)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²³⁻¹⁾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③ 삭제 (1998. 9.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4. 6. 11.]

23 제외자 개내자 내국인 외국인은 각각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 (한국 국적)	외국인 (외국 국적)
제내지 (한국 주거)	-	-
제외자 (외국 주거)	5,206 (방식사유, 특허 권리인 등) / 25(기밀이유)	5,206 (방식사유, 특허 권리인 등) / 25(기밀이유)

23-1) 서류작성, 제출, 승인

작성 - 고우면회주소, 서명(전자서명)

제출 - 직접 우편, 온라인

승인 - 직접 우편, 온라인, 공시

24) 시규와 허정 허심판원의 거의 모든 절차라고 보면 된다.

25) 시구②. 특히 청. 특히 신민들은 가
급적 사전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질차를 빙는 서류에는 주소 대신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을 것을 적
극 권장하고 있다.

26) 시규2. 주소 또는 고유번호 중 하나
를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시규11).

27) 시국 9-2(3), 단 국방관련 출입의 경우는 비밀해제봉지 전까지는 전자로 서로 관련 서류를 체출할 수 없다.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²⁴⁾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²⁵⁾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 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²⁰⁾

⑤ 특히에 관한 결자를 밟는 자의 내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²⁷⁾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¹¹⁾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26) 시구2
방식상 일반서류 품수기재사항 - 성명+고유번호(또는 주소)+서명(또는 날인)

방식상 전자문서 풀수기재사항 - 성
인 고유번호(또는 주소) 진자번호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결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
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
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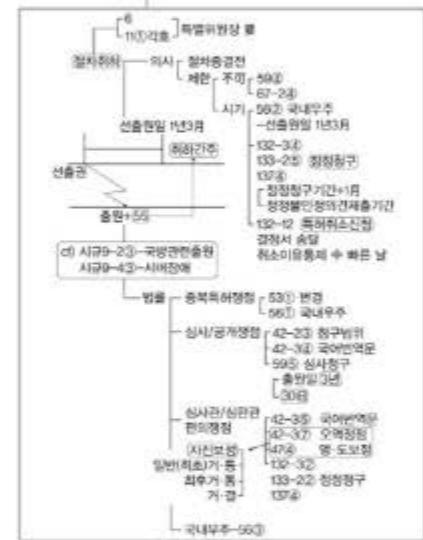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²⁹⁾,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³⁰⁾ [전문개정 2014. 6. 11.]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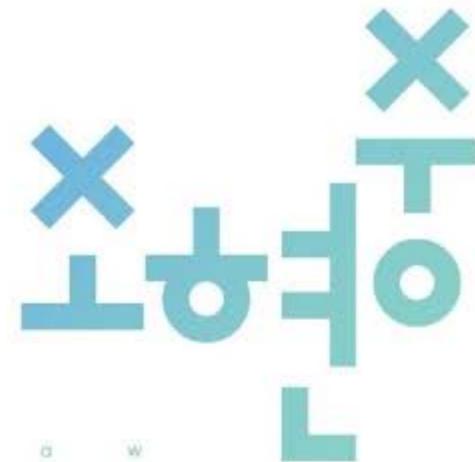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³¹⁾·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29) 4139-3

30) 시군9-4(3) 전시장비



조현중 특허법

서브집 핸드북

제3판 | 변리사 조현중

정가 19,000원



이 책은 도서출판 월비스가 저작권자와 계약에 따라 발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문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